##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8

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서범수・김기현・서천호

성일종 • 이인선 • 김위상

장동혁 • 곽규택 • 백종헌

신성범・조 국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학교(이하 "과학영재학교"라 함)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 신설).
- 나.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 도록 함(안 제7조의2 신설).
- 다.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(안 제7조의3 신설).
- 라.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 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그 조직·기능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의2).
- 마.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·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, 교원의 보수·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의4 신설).
- 바.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 5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부설기관)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과학영재학교의 설치·운영)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(이하 "과학영재학교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.
  -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·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을 따르고 「초·중등교육 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·감독한다.

제7조의3(학력의 인정)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9조제1항 중 "울산과기원"을 "울산과기원(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제9조의2제1항에"를 "제9조의2제1항 전단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9조의2제1항에"를 "제9조의2제1항 전단에"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"교원인사위원회"를 "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교원인사위원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정관으로 정한다"를 "정관으로,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·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과학 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)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 • 교감 및 교사를 두고,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.

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·수당·배치기준·계약기간·근무조건·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.

-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.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9조의5(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.

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울산과기원"을 "울산과기원 (부설기관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2(부설기관) 울산과기원은
	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
	설기관을 둘 수 있다.
제4조(정관) ① 울산과기원의 정	제4조(정관) ①
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	
기재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3의2.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4. ~ 11. (생 략)	4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7조의2(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
	운영)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
	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
	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
	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
	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
	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
	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(이
	하 "과학영재학교"라 한다)를
	<u>둘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
	두는 과학영재학교는 「영재교

<신 \_설>

제9조(교원의 임면) ① <u>울산과기</u> 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.

## ② ~ ④ (생 략)

⑤ 총장은 <u>제9조의2제1항에</u>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

- 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 로 본다.
-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·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영 재교육 진흥법」을 따르고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.
-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 위·감독한다.

제7조의3(학력의 인정) 과학영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「초 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 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9조(교원의 임면) ① <u>울산과기</u> 원(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)--

-----.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
   ⑤ -----제9조의2제1항 전단

   로 교의이시의의회에 계의용
   세

\_\_\_\_\_

\_\_\_\_\_

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. 이 경우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⑦ (생략)

제9조의2(교원인사위원회) ① 울 저 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교원인사위원회</u>를 둔다. <<u>주단 신설></u>

⑥ <u>제9조의2제1항 전단에</u>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⑦ (현행과 같음)
세9조의2(교원인사위원회) ①
교원인사위원회(이하
"교원인사위원회"라 한다)

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·기 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정</u> 관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 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(이 하 "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------정 관으로,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 위원회의 조직·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.

제9조의4(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)
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・교감 및 교사를 두고,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.
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・수당・배치기준・계약기간 •근무조건・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.

-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 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 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①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 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.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

<신 설>

제16조의2(평의원회) ① <u>울산과기</u> 제16조의2(평의원회) ① <u>울산과기</u> 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 다. 다만, 제2호는 자문에 한정 하다.

1. ~ 5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를 준용한다.

제9조의5(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)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, 「고등교육 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 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 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 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 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.

원(부설기관은 제외한다)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